

의안번호	2202004
의 퇴 인	조정훈 의원
회 답 일	2024.08.08.
추 계 번호	24C2185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)	(제2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(이하 “특성화특수학교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(제3항) 제2항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(이하 “특성화특수학교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과 같이 특성화중학교, 특성화 고등학교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의 지정·운영 근거 마련을 제안이유로 밝힘

□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“특성화특수학교”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정될 학교 및 학생수, 필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

- 교육부는 ‘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(2023~2027년)’에서 ‘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’를 통하여 교육선택권 확대 계획을 밝힘
 - － 교육부는 해당자료에서 대학-지자체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, 예술, 체육 등 특정 분야 중점 특수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였음
- 또한,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정분야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

[표] 특정분야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현황

학교명	개교 일자	설립 형태	학급수	학생수	연면적	비고
대구 예아람학교	‘21.3.	공립	30학급	174명	15,127㎡	예술교육 (유,초,중,고, 전공)
대구 이룸고등학교	‘22.3.	공립	23학급	143명	14,306㎡	직업교육 (고)
국립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	‘24.9. (예정)	국립	18학급	126명	11,789㎡	직업교육 (고)
부산대 부설 특수학교(가칭)	‘27.3. (예정)	국립	21학급	138명	14,588㎡	예술교육 (중,고)
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(가칭)	‘27.3. (예정)	국립	21학급	138명	14,178㎡	체육교육 (중,고)

자료: 교육부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“특성화특수학교” 지정·운영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추가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정·위탁될 학교 및 학생수, 필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
 - － 특정분야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이미 운영중인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성화특수학교가 법정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, 현행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(개정안에 따른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¹⁾)에 따라 사립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과 이에 따른 경비지

1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6조(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

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

- 이에 개정안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